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4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모병철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90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9.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2019. 9.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21. 2. 1.경 G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2021. 2. 4. 제1심 기록을 열람, 복사하면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6. 7. 4. D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E 무인호텔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대금채권 99,299,200원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5. C에게 도달되었다.
-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701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23. 'C은 원고에게 99,2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 1) C은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6. 12. 28. 접수 제2866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2) C은 2017. 5.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7. 5. 24. 접수 제10699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3) 한편, 피고는 2017. 6. 7.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청구원인)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C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99,29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 2)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 I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원고는 앞서 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C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2017. 3. 2.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94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3.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시점에 이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② 원고의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금액 합계 310,357,237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1) 2016. 11. 11.자 상주시, 2016. 12. 2.자 양산시, 2017. 1. 9.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일자	가압류결정	채권자	청구금액
1	2016.08.0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카단271	J	133,666,000원
2	2016.08.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962	K 주식회사	65,200,000원
3	2016.08.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카단317	L 주식회사	5,066,798원
4	2016.10.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554	M 주식회사	11,400,000원
5	2016.11.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3018	K 주식회사	16,000,000원

6	2016.12.08.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5747	N, O, P	58,024,439원
7	2016.12.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3283	K 주식회사	21,000,000원
합계				310,357,237원

③ 이외에도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5. 3. 25.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Q, 채권최고액 76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2015. 9. 24.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Q,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2016. 9. 29.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각 R, S 주식회사로 한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④ 한편, 원고의 가압류신청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F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식회사 T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평가액은 2017. 7. 10. 기준 168,000,000원이었다. 당시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위 대지에 비하여 면적이 작고 그 지목이 도로, 임야이며, F이 해당 필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⑤ 상주시 U 및 V의 2017. 7. 1.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m^2 당 15,1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지분인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지가는 각 8,914,392원[= 15,100원 $\times$ 1,102 m^2 $\times$ (1,102.5 / 2,05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83,866원[= 15,100원 $\times$ 58 m^2 $\times$ (2 / 3)] 합계 9,498,258원(= 8,914,392원 + 583,866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지가의 2배로 보더라도 186,996,516원[= 168,000,000원 + 18,996,516원(= 9,498,258원 $\times$ 2)] 상당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C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C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과 C에게는 그 재산 가치를 넘는 가압류 채무와 근저당권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가압류를 신청할 2017. 3. 2.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C의 사해의사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2017. 3. 2.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15.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한편,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C를 채무자로 하는 2016. 9. 29.자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만도 600,000,000원인바(근저당권 설정시점 등에 비추어 2016. 12.경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던 보인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인 2016.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이지혜

부동산목록

1. 경상북도 상주시 대2,000㎡
2. 경상북도 상주시 도로1102㎡
중 지분 2058분의 1102.5
3. 경상북도 상주시 임야58㎡
중 지분 2/3 분.

1) 순번 3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순번 6 가압류등기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순번 3, 6을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상주시의 압류등기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양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한편, 2015. 3. 25.자 및 2015. 9. 24.자 각 근저당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이외에 채무자인 Q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C은 위 근저당채무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Q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중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3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